



사회성과보상사업과 사회적경제

- ☑ (추진배경) 새로운 사회문제 지속 발생, 충분하지 못한 공공의 재정 여력 등으로 대두된 SIB를 사회적경제 활성화의 일환이자 사회적경제의 새로운 형태로의 관점 검토 필요
- ☑ (추진목적) 정책입안자 대상 사회적경제 활성화 수단으로서 SIB 관련 정책적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국내·외 사례정리, SIB 주요과제, SIB와 사회적경제 간 관계 등 SIB 종합 정리
- ☑ (국내현황) 2015년부터 서울시, 경기도 등 몇몇 지자체를 중심으로 관련 조례 제정 및 SIB를 추진하였으나 근거법령 부재 및 중앙정부의 지원 미흡으로 SIB 진입 및 추진 한계
- ☑ (국외현황) 2010년 영국을 시작으로 많은 나라에서 다양한 형태의 SIB 도입, 2021년 3월 기준 전 세계적으로 204개 SIB 추진 중
 - SIB 시장이 성숙될 때까지 중앙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며 영국의 정부주도형과 미국의 민간주도형이 공존하는 한국형 모델 구축
- ☑ (주요과제) 현재 SIB는 근거법령 부재, 다양한 성과보상자의 참여 확대 필요, 운영기관 및 수행기관 책무성 강화, 민간투자자의 투자요인 부족 등의 다양한 과제 산재
- ☑ (SIB & 사회적경제) SIB는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① 스케일 업, ② 성과지향적 역량강화, ③ 대국민 신뢰감·체감도 향상, ④ 다양한 사업 기회 제공, ⑤ 사회적경제 지원정책의 방식 변화 도구
 - 사회적경제는 ① 지역중심적이고 수요자의 복합적 문제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공급, ②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파트너십 관계 속에서 운영됨에 따라 SIB 성공률 제고

CONTENTS

1	추진개요	3
2	사회성과보상사업 개념 및 현황	4
	1 사회성과보상사업 개념	4
	2 국내현황 및 시사점	6
	3 국외현황 및 시사점	7
3	사회성과보상사업 주요과제	9
4	사회성과보상사업과 사회적경제	11
	1 사회적경제 대상 SIB 적용 의미	11
	2 SIB 대상 사회적경제 적용 의미	14

1

추진개요

새로운 공공서비스 공급 메커니즘이자 사회적경제 활성화 일환 및 사회적경제의 새로운 형태로 SIB를 인식하고 종합 검토

- ☑ (추진배경) 다양한 사회적 요구 증대와 함께 재정의 효율적 활용에 대한 요구가 동시에 나타남에 따라 공공서비스 공급을 위한 새로운 민관협력 방식의 사회성과보상사업(이하 ‘SIB’) 대두
 - (SIB 전체동향) SIB는 영국에서 2010년 대규모 행정비용절감과 그에 따른 행정서비스 효율성 제고를 위해 처음 실시하여 긍정적 성과를 도출한 이후 선진 국가에서 도입·실시
 - (SIB 국내동향) 우리나라에서도 ‘저출산·고령화’, ‘재정적자의 확대’ 등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 대처 및 사회혁신의 일환으로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SIB 도입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
 - (사회적경제) 시장과 정부가 해결하지 못하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적 경제체제로서 사회적경제가 확산 중이나 정부의존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 성과에 대한 체감도 저조
 - (SIB&사회적경제) 새로운 사회문제 지속 발생, 충분하지 못한 공공의 재정 여력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으로서의 SIB를 사회적경제 활성화 일환이자 사회적경제의 새로운 형태로 접근
 - SIB의 민간 참여 및 투자를 통한 협치 문화 확산과 효율성 증대, 성과 중심의 평가를 통한 정책의 책임성, 생산성 제고 등은 사회적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

- ☑ (추진목적) 정책입안자 대상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단으로서 SIB 관련 정책적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국내외 사례정리, SIB 주요과제, SIB와 사회적경제 간 관계 등 SIB 종합 정리

- ☑ (추진방법) 본 자료는 ① 국내·외 문헌자료 및 인터넷을 활용한 자료수집, ② SIB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관련 전문가 및 지자체 담당자 등과의 인터뷰, ③ SIB 관련 조례분석 등을 통해 내용 정리

2

사회성과보상사업 개념 및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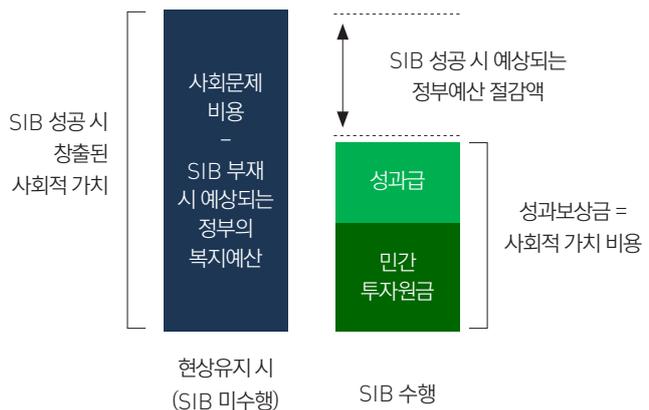
1. 사회성과보상사업 개념

SIB는 예산 절감 및 효율성 제고, 협치 문화 확산, 성과 중심의 평가를 통한 정책의 책임성·생산성 제고, 사회적 투자 확대 목적

- ☑ (개념) 민간이 투자를 받아 사회적 성과를 창출하고 정부가 민간이 달성한 사회적 성과를 사후에 구매하는 사업(행정안전부, 2017)
- ☑ (특징) SIB는 ① 사회문제의 선제적 대응을 통한 예산 절감과 ② 민간의 참여와 투자 확대를 통한 협치 문화 확산과 효율성 증대, ③ 성과중심의 평가를 통한 정책의 책임성·생산성 제고, ④ 사회적 금융과 사회적 투자 확대 발판 마련을 목적

SIB에 적합한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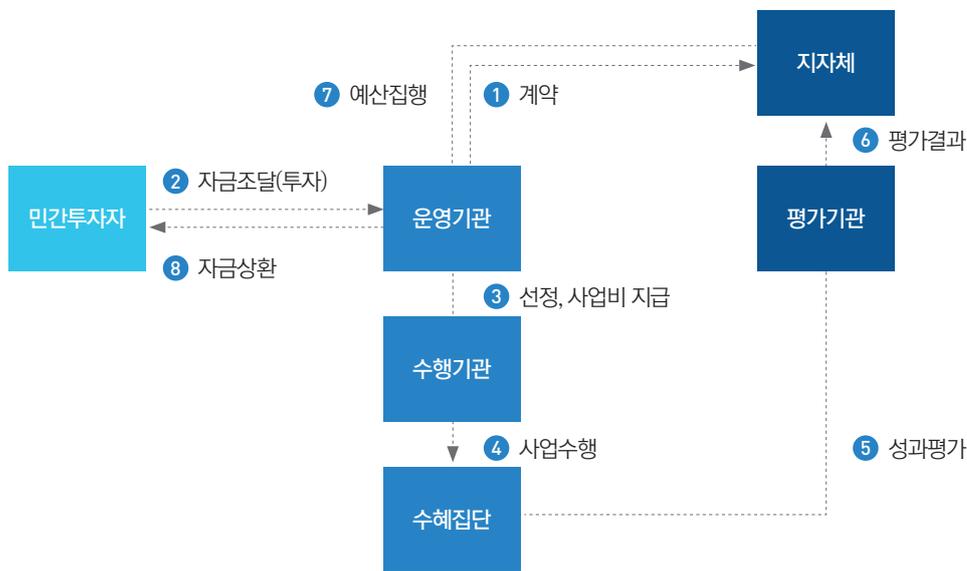
-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업
- 민간의 참여와 투자를 통하여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복지, 고용, 주거 등의 분야에서 사회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
- 객관적·정량적 성과지표가 존재하는 사업 등
- '성과보상금(사업비+인센티브), <장기적 행정비용>을 달성하는 사업



- ☑ (수행체계) 운영기관이 민간투자자를 확보하고 수행기관을 선정관리하며 사업을 추진, 사회성과 달성 시 정부로부터 보상(사업비 + 인센티브)을 받는 구조
- SIB사업을 통해 민간투자자는 '안정적인 투자 수익+사회문제 해결 명예심'을 가질 수 있어 민·관이 함께 협력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국민 전체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되는 선순환 구조 생산

SIB 운영구조

- 1 지자체(성과보상자)는 특정한 사회문제의 해결 정도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계약을 운영기관과 체결
- 2 운영기관은 지자체와의 계약을 근거로 민간투자자로부터 사업자금을 조달
- 3 운영기관은 사업수행기관을 선정하여 사업수행을 관리
- 4 사업수행기관은 사회성과를 목표로 수혜집단 대상 서비스 공급
- 5 사업 종료 후 독립된 평가기관이 정해진 성과지표에 따라 사업성과 평가
- 6 평가기관이 사업성과 평가결과를 지자체에 전달
- 7 지자체는 사업성과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계약된 내용에 따라 운영기관에 예산집행(사업비 + 인센티브 지급)
- 8 운영기관은 민간투자자에게 투자원금 및 인센티브 상환



☑ (공공사업 vs SIB) 기존 공공사업은 정부가 주도하는 수행 체계로 성과와 관계없이 사전적인 예산 집행 → 예산의 비효율성 발생

- SIB는 지자체, 운영기관, 민간투자자, 수행기관, 평가기관 등이 참여하여 **민·관 협치 실현 체계**로서 성과에 따라 사후적으로 예산을 집행하여 사회적 성과를 구매 → **예산의 효율성 제고**

구분	공공사업	사회성과보상사업(SIB)
예산집행	사업성과에 관계없이 사전적으로 예산 집행* 세금을 수행비용에 사용	사업성과에 따라 사후적으로 예산 집행* 세금을 사회적 성과에 사용
문제해결	문제 발생 후 사후 대응으로 사회적 비용 및 문제해결 비용 상승	사전 예방적 사업에 집중하여 사후 문제해결 비용 절감
예산문제	정부의 예산부족 문제 심화	중장기적으로 예산부족 문제 개선
리스크	정부가 사업결과에 대한 리스크 부담	사업결과에 대한 리스크는 자발적 투자자들에게 분산
주관	정부 중심의 사업 수행	정부, 민간투자자, 운영기관 및 수행기관, 평가기관 등 민·관 협치 실현

2. 국내현황 및 시사점

2015년부터 몇몇 지자체를 중심으로 관련 조례 제정 및 SIB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나
근거법령 마련과 함께 중앙정부의 지원 필요

- ☑ (사례) 국내에서는 SIB 시행 초기단계로 국내 1호 서울시와 국내 2호 경기도 사업이 목표치를 달성하면서 소기의 성과 창출
 - 서울시와 경기도는 첫 번째 사업 성공에 힘입어 다른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부여군도 치매예방사업을 추진 중 → 창업도약 (3~7년 미만)로 나누어 지원

국내 SIB 추진현황

구분	사업내용	기간	사업비(순 절감액*)
서울시	사업완료 • 경계선 지능 아동의 장애 예방 - 경계선급 지능 아동 74명	약 3년	총 10.3억 원(약 37억 원)
	추진중 • 청년 실업 해소 - 서울시 거주 청년 무직자 500명	약 3년	총 30억 원(-)
경기도	사업완료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제적 자립 - 수급자 800명 대상	약 3년	총 14.5억 원(약 100.2억 원)
	추진중 • 여성의 경력단절 사전 예방 - 초등학교 1학년 이하 자녀를 둔 200가구	약 2년	총 16.3억 원(약 11억 원)
	추진중 • 보호처분 대상 청소년의 재범률 감소 - 보호처분 중인 청소년 100명	약 2년	총 22.5억 원(약 12.9억 원)
	추진중 • 노인의 치매 발병 예방 - 경기도에 거주하는 70~79세 노인 1,000명	약 2년	약 18.7억 원(약 9.7억 원)
부여군	추진중 • 경도인지장애인 치매진단을 감소 - 부여군에 거주하는 경도인지장애인 120명	약 3년	총 5억 원(-)
화성시	추진예정 • 외식업 생존율(40% 이상) 제고 - 예비창업자 및 기창업자	약 4년	총 25억 원(약 14.9억 원)

- ☑ (조례) SIB는 지자체별로 조례를 제정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7개 광역자치단체, 10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조례 시행* [붙임 4]

* (광역) 서울, 인천, 광주, 경기, 충남, 경남, 제주, (기초) 서울 성동구, 부산 남구, 경기 시흥시, 남양주시, 수원시, 안양시, 화성시, 군포시, 충남 부여군, 전북 무주군

- ☑ (조례비교) 총 17개 자치단체의 조례를 비교 검토한 결과, 대상사무, 기본계획, SIB 자문 및 심의를 위한 위원회 구성 운영, 사업 동의, 운영기관 및 평가기관 선정 등 대부분의 규정 유사
 - 일부 지자체의 경우 SIB 이전 타당성 평가 및 검토, 사업별 자문위원, SIB실무단, 시장 등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조항 존재
- ☑ (SIB안내서) 행안부는 2017년 SIB 추진안내서를 발간하여 SIB에 대한 지자체의 이해를 돕고 SIB를 권고하고 있으나, 관련 내용이 간략하며 행정절차상 정보제공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 ☑ (근거법령) 지난 제20대 국회와 제21대 국회에서도 중앙정부의 SIB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이 발의되었으나 폐기
- ☑ (시사점) 근거법령 마련에 일정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중앙정부는 단기적으로 SIB 확산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 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타당성 검토 등의 비용 지원 필요

3. 국외현황 및 시사점

SIB 시장이 성숙될 때까지 중앙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며 영국의 정부주도형과 미국의 민간주도형이 공존하는 한국형 모델 필요

- ☑ (최초 SIB) 영국은 2010년 세계 최초 피터버러(Peterborough) 지방 교도소 출소자 대상 재범률 감소를 목적으로 총 8년간 SIB 사업 실시[붙임 3], 이후 미국·벨기에·독일 등으로 확산
- ☑ (SIB 데이터베이스¹⁾) 사회적 금융 전문기관인 Social Finance가 공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5월 기준 전 세계적으로 138개 SIB사업, 약 4억 4천 1백만 달러(약 5,208억 원) 자본 모집, 171만 명 지원
 - (국가) 영국 47개, 미국 26개, 네덜란드 11개, 호주 10개로 100개 이상 SIB사업이 4개 국가에서 추진 중, 영미권 국가 적극적 활용
 - (분야) 취업 및 일자리 분야 44개, 주거 및 노숙자 분야 23개, 보건·의료 분야 22개, 아동 및 가정보호 분야 20개, 교육 분야 14개, 범죄 예방 및 정의 실현 분야 12개, 빈곤 및 환경 분야 3개
- ☑ (영국 SIB) 국정 철학인 Big Society* 건설을 위한 사회적 투자 생태계 조성 정책에 따라 정부의 전폭적 지원하에 SIB 추진
 - * 중앙정부의 권한과 역할을 시민, 지역사회, 지방정부에 이양하고 관련 역량을 강화시켜 공공부문 예산부족과 서비스 비효율성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

1) <https://sibdatabase.socialfinance.org.uk/>

- (사회적 투자 생태계) 2010년부터 ① 사회적 투자 공급 확대, ② 사회적 투자 수요 증대, ③ 사회적 투자 환경개선 등을 골자로 한 사회적 투자 생태계 조성 정책 실시*
 - * ① 사회적 투자 공급 확대(사회적 은행 Big Society Capital 설립, 사회적 투자자 대상 세제 혜택), ② 사회적 투자 수요 증대(SIB 발행, 사회적 인큐베이터 펀드 및 투자 준비 펀드 조성), ③ 사회적 투자 생태계 조성(사회적 증권거래소, 사회적 가치 법 제정 등)
- (정부 주도) 정부가 사업 대상 및 목적에 따라 SIB펀드를 조성하고 1개의 펀드 대상 복수계약 등을 체결하여 SIB 빠르게 확산* **
 - * 정부가 수행기관과 투자기관을 선정하고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다수(전체 SIB사업의 85% 차지)이며, 이 경우 운영기관은 SIB 구조 설계, 자문 등으로 한정
 - ** 예) 청년 노숙자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조성된 Fair Chance Fund는 7개 지역별로 각각 수행기관을 선정하여 계약 체결, 이러한 복수계약 방식은 비용절감 및 사업의 효율성 측면에서 강점
- (SIB 생태계) ① 공격 성격이 강한 사회적 금융 전문기관들이 운영기관으로 참여, ② 사회적 투자자 중심으로 SIB투자기관 구성

☑ (미국 SIB) 미국의 SIB시장은 민간이 임팩트 투자에 대한 관심과 함께 성장, 민간 금융사 등 민간기관 역할이 영국에 비해 큼

- (민간 중심) 2012년 미국 최초 SIB는 뉴욕시 라이코스 교도소 대상 출소자의 재범률 감소를 목적으로 총 4년간 실시, 골드만 삭스, 블룸버그 재단 등 민간 기관의 역할 부각*
 - * 민간 자선단체인 블룸버그 재단이 SIB 활성화 차원에서 760만 달러 지급보증을 제공함에 따라 골드만 삭스가 총 960만 달러 단독 투자(투자자 원금의 75% 보장)
- (SIB 생태계) ① 운영기관 주도하에 개별계약 형태로 추진, ② 영국에 비해 학교·연구기관 등 다양한 기관들이 운영기관으로 참여, ③ 사회적 금융만이 아닌 민간 금융사도 투자기관으로 참여
- (정부 간접지원) 연방정부는 2018년 연방법* 제정을 통해 주정부의 성과보상금, SIB 타당성 연구 자금 등 SIB 관련 재정 일부 지원
 - * 「성과기반보상을 위한 사회성과협력법(Social Impact Partnership to Pay for Result Act, SIPBRA)」

영국과 미국의 SIB 구조 비교

구 분	영국	미국
정부 정책	정부 중심	민간기관 및 주정부 간접지원
계약	정부 주도	운영기관 주도
계약형태	복수 계약(SIB펀드)	개별 계약
투자자	사회적 투자자 중심	민간 금융사 및 비영리단체
운영기관 참여	단수 운영기관	복수 운영기관

☑ (시사점) 국내 SIB 시장은 미국과 같이 민간 중심의 SIB 시장이 단시간 내 추진되기 어려운 환경인 점을 감안하여 현재 상태에서는 SIB 시장이 성숙될 때까지 정부의 적극적 역할 필요

- 영국의 Top Down 방식의 정부 주도형과 미국의 Bottom Up 방식의 민간 주도형이 공존하며 한국형 SIB 시장 정착화 필요

3

사회성과보상사업 주요과제

현재 SIB는 근거법령, 다양한 성과보상자의 참여, 운영기관 및 수행기관 책무성, 민간투자자의 투자요인 부족 등의 과제 존재

☑ (중앙정부) SIB는 관련 법률적 근거가 없어 각 지자체별 조례 제정을 통해 운영됨에 따라 일부 지자체에서만 제한적으로 실시하거나 민간투자자 모집 등 SIB 활성화 및 확산 한계

- ① SIB 안정적 시행을 위한 근거 법령 마련, ② 중앙단위 SIB 관련 기금 조성을 통해 지자체 성과보상금, 타당성 검토 등 지원
- ③ SIB 근거 법령 마련 및 중앙단위 기금 조성 등에 일정한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SIB 확산여건 조성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 (지방정부) 지자체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실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곳은 소수, ① SIB 추진을 위한 조례 제정, ② 사업예산 수립 및 성과구매 방법(공적기금, 보증채무 부담행위)* 등 준비 필요

* 근거 법령이 없는 상황에서 현실적인 SIB의 예산 수립 방법은 ① 공적기금과 ② 보증채무 부담행위이며, 원칙적으로 SIB 성격(다년도 사업, 성과구매방식 등)상 기금을 통해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효율적

☑ (성과보상자) 현재 조례상 성과보상자를 지자체로 한정,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기금 등 다양한 형태의 성과보상자 참여를 통해 재원 규모를 넓히며 혁신성, 확장성, 자생력 등 확보*

* SIB가 확산되고 있는 영국, 미국 등 주요 국가에서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비영리재단 등도 성과보상자의 역할 담당, 영국의 피터버러 사례 역시 중앙정부와 복권기금(Big Lottery Fund)이 공동 성과보상자로 참여

☑ (운영기관) ① 투자자 모집 시 전문투자자의 모집행위와 동일한 법적 규제 적용*, ② 사업 실패에 따른 재무적 위험을 감당하지 않음에 따라 자기부담금 부담 등을 통한 사업성공 책무성 강화**

* 예) 자본시장법에 의한 '집행투자기구(50인 이상 공모 투자 절차 신고 복잡, 금융당국의 감독과 규제)', '온라인 소액투자 중개(개인투자자 한도 200만원, 사업별 7억 원 이상 모집 불가, 7년 이하 업력 및 비상장 중소기업에만 해당)' 등

** 경기도는 운영기관 대상 사업성공에 대한 책무성을 담보하기 위해 자기부담금을 부담하도록 하였으며, 자기부담금은 성과보상금 산정 시 민간투자금에 포함하여 산정하도록 함(경기도 해봄 프로젝트 사회성과보상사업 협약서 제2조)

☑ (민간투자자) ① 투자기관의 낮은 SIB 이해도*, ② 사업실패의 위험을 민간투자자에게 전가하는 구조임에 따라 대규모 투자자 모집 한계, ③ 민간투자자에 대한 세제혜택 등 투자요인 부족

*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정책적 논의가 이뤄지지 못한 상황에서 지방정부가 SIB 사업을 도입함에 따라 사회적 인식 확산 저조

① (세제혜택) SIB 특성상 민간투자자가 재무적 위험을 감당하는 주체임에도 현 세법상 일반세율(이자소득, 배당소득)인 15.4%를 적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 관련 법 개정을 통한 세금 혜택 필요*

* 영국의 경우, 사회투자금 혹은 사회투자를 통한 자본차익에 관하여 세금감면 혜택(Social Investment Tax Relief, SITR) 제공

2 (원금보장 지급보증) 투자자의 투자 손실에 대한 위험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원금보장에 대한 지급보증,

① 신용보증재단 등과 같은 기관 또는 ② 기금으로 SIB에 대한 지급보증* **

* 미국 최초의 SIB '뉴욕 라이커스 교도소 출소자 재범률 감소'는 골드만삭스 투자은행이 4년 간 총 960만 달러 투자 및 블룸버그 재단이 원금보장 기금을 조성하여 사업 실패 시 투자자의 원금을 75%까지 보장

** 영국은 Big Lottery Fund를 통해 SIB에 대한 지급보증을 추진하여 민간투자 활성화 지원

3 (사회공헌자금 활용) ① 운영기관이 상법상 기업으로 분류되어 기업 CSR 자금(기부금)을 직접 수령하지 못하는 사례 존재* **, ② 사업 성공시 정부가 지급하는 원금, 이자를 처리할 계정 부재 등

* 경기도의 경우, 기부금 처리가 가능한 수행기관이 직접 기부금을 수령하도록 하고 지자체는 기부금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협약서 명시(경기도 해봄 프로젝트 사회성과보상사업 협약서 제14조)

** 기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배분 대상을 비영리단체로 한정했으나 SIB사업 참여를 위하여 회규를 개정하여 비영리단체만이 아닌 사회복지활동을 행하는 법인 등으로 변경, 서울시 청년 실업 해소 SIB사업에 민간투자자로 참여(7.5억 원)

① 기업의 CSR, 사회공헌재단 등의 사회공헌자금을 투자금으로 비용 투입*, ② 비영리기관 등 기부금 투자가 어려울 경우 사업비를 보증하는 보증지급기관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KB손해보험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정기탁금 제도를 활용하여 서울시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SIB에 연간 1억 원씩 총 3억 원을 투자, 해당 SIB사업 종료 후 모금회가 원금을 돌려받아 타 SIB사업에 재투자할 예정

③ 기부금 반환을 가능하게 해서 사회공헌자금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필요

4 (공적자금 연계) 민간투자가 어려운 것은 사회투자시장이 아직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 민간투자 유치를 위해 노력하되 초기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로 각종 기금 등 정부 자금 투입 필요* **

* 사회적기업 모태펀드와의 연계가능성을 모색한 결과, 해당 모태펀드가 SIB 공적 투자자로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개별 기업단위로 투자가 진행되는 것뿐만 아니라 프로젝트 투자가 가능해야 하는데, 이는 <벤처투자법 시행규칙> 등의 개정 필요

** 국내 1호 서울시 SIB 운영기관의 경험을 보유한 팬임팩트코리아 객체훈 대표 인터뷰(2022. 4. 1.)에 의하면, 대부분 각종 기금들의 운용지침과 SIB 운영방식이 서로 맞지 않음에 따라 SIB만을 위한 기금조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간주

5 (인센티브 한정) 민간투자자 인센티브를 한정하여 지급하는 규정은 기업 등 투자자로 하여금 투자를 위축하게 만드는 요인

• 수익 폭이 제한적인 SIB구조*는 타 대안적 투자수단과 비교할 때 경쟁력이 부족할 수 있으며, 운영기관 역시 사업비 내에서만 성과를 달성하려는 유인을 가지므로 인센티브 한정 규정 지양

* 서울시 경계선 지능 아동교육 SIB(2016년 8월 ~ 2019년 8월)의 성과보상체계는 -100%, ~ 30%, 경기도 기초생활수급자 자립 지원(해봄 프로젝트) SIB(2017년 2월 ~ 2020년 6월)은 원금 부분보장형이긴 하나 최대 수익률이 10%으로 제한

6 (투자자 발굴) 신탁 등 지역금융기관이 지역에 필요한 서비스 공급에 견인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선제적 투자 요청

7 (수행기관) ① SIB 성공의 관건은 수행기관의 전문성 확보, ② 사업 실패에 대한 패널티 및 사업 성공을 유인하기 위한 인센티브(별도의 성과금 또는 SIB 명칭에 해당 수행기관명 반영 등) 마련 필요*

* 국내 2호 SIB사업인 경기도 해봄 프로젝트의 경우 운영기관과 수행기관 간 사업 실패 시 수행기관의 사업비를 일부 반환하는 곳으로 계약 체결

4

사회성과보상사업과 사회적경제

1. 사회적경제 대상 SIB 적용 의미

SIB는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① 스케일 업, ② 성과지향적 역량강화, ③ 대국민 신뢰감·체감도 향상, ④ 다양한 사업 기회 제공 도구로서 유용

① SIB는 안정기 단계 사회적경제기업의 스케일 업 도구로 유용

☑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 사회적기업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정책 아래 양적 확대와 더불어 고용인원, 평균 매출액 등이 증가하였으나 매출구조의 상당부분이 정부 지원금에 해당²⁾

- 정부지원은 취약한 사회적기업에 있어서는 수익창출이나 사회적 가치 창출 노력을 촉진시키는 반면, 장기적이고 지나친 보조금의 지급은 정부의존에 대한 타성을 높이는 부정적 측면 동시 존재

☑ (지원방식 다각화) 이에 따라 사회적기업 생애주기(설립초기·과도가·안정기)에 따른 지원방식의 다각화 필요

- 특히, 운영기반이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는 안정기 단계의 사회적기업에는 매출 등 경제적 성과만이 아닌 기업 본연의 사회적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지원 구조 마련 필요*

* 설립초기 단계는 직접적인 재정지원을 통해 초기 경영안정화를 위한 기반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자원 확보 지원, 아직 안정적 기반이 자리 잡지 않은 과도기 단계는 직접비 방식의 보조금 지급보다는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

☑ (스케일 업 도구 SIB) 이러한 측면에서 재무적 수익과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하는 SIB는 안정기 단계 사회적경제 기업의 스케일 업 도구로 유용

② SIB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성과지향적 역량을 강화시켜주는 도구

☑ (성과중심 SIB) SIB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민간 운영기관이 투자를 받아 사회적 성과를 창출, 사후적으로 정부가 성과를 구매하는 방식임에 따라 ‘Outcome 중심, 성과주의’가 핵심키워드

- 각종 보조금, 지원사업의 성과창출은 Output 중심이었으나 SIB는 Outcome 중심임에 따라 실질적인 성과창출이 중요

2) 황정윤·장용석, 2017. 사회적기업 지원의 딜레마: 정부보조금, 약인가 독인가. P 233.

☑ (성과지향적 역량) 따라서 수행기관으로 역할을 담당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은 해당 사업 수행과정 속에서 사회혁신 주체로 성장하며 성과지향적 역량을 축적할 수 있는 계기 마련

3 SIB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창출하는 사회적 성과 확대와 함께 국민적 신뢰감과 체감도를 향상시켜주는 도구

☑ (저조한 체감도) 서울시 사회적경제 시민체감도 측정 연구³⁾ 결과, 일반시민이든 고관여시민 모두 사회적경제가 ‘복잡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이 된다’는 질문에 높은 부정적인 응답률*

* ‘생활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사회적경제조직을 신뢰한다’,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다’, ‘복잡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이 된다’는 질문에 대해 일반시민 및 고관여시민 모두 타 질문 대비 부정적인 응답률이 높게 나타남

☑ (대국민 공감대 형성 등) 사회적경제가 SIB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해 나가며 실질적인 사회적 성과를 창출하는 과정 속에서 대국민 공감대 및 신뢰 형성, 정부 지원의 정당성 확보

4 SIB는 사회적경제기업의 다양한 사업 기회를 확장시키는 도구

☑ (자율성 & 혁신역량) SIB는 기존 정부의 보조금 또는 위탁사업 등과는 달리 예산 집행 및 사업 수행 방식에 있어 높은 수준의 자율성이 확보됨에 따라 혁신역량 발휘 가능

• 특히, SIB 성공 시 수행기관을 담당한 사회적경제기업은 기존의 사업영역 확장, 신규 시장 발굴 등 폭넓은 사업 기회 확보* **

* 국내 SIB 1호 ‘서울시 경계선 지능 아동 교육’ 수행기관을 담당한 대교문화재단은 해당사업을 기반으로 서울시교육청과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 업무 협약 및 경계선 지능 아동 대상 1대 1 맞춤형 교육 신규 시장을 발굴하여 서비스 론칭

5 SIB는 사회적경제 지원정책의 방식 변화 도구

☑ (개별 기업 중심) 대부분의 사회적경제 지원정책은 전체적인 생태계 조성보다는 사회적기업 등 개별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지역사회 발전 청사진과 연계성 미흡

☑ (지역 미션 중심) SIB는 다양한 주체들과의 협력에 기반한 지역사회 문제해결 및 필요 서비스를 공급한다는 측면에서 사회적경제 지원정책이 지역 미션 중심으로 재편되는 계기 마련

6 SIB는 내실 있는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도구

☑ (수혜집단) 사회적경제기업을 수행기관이 아닌 수혜집단으로 설정할 경우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SIB’를 추진할 수 있으며, 그 결과 내실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양적 확대에 기여

3)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2020. 서울시 사회적경제 시민체감도 측정 연구.

참고 사회적기업 성장·확장 전략으로서의 SIB 적용 사례⁴⁾

☑ (사회적기업의 이름을 딴 SIB) 영국에서 사회적기업 Skill Mill은 자신의 기업 이름을 딴 범죄예방분야 SIB ‘The Skill Mill’을 4년간 8개 지방정부와 함께 추진**

* Skill Mill은 2013년 환경청과 뉴캐슬 청소년팀 간 파트너십을 통해 범죄 경력을 보유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역의 수자원 관리 및 환경 유지보수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설립된 사회적기업으로 현재 전국 13개소 지점 운영

** 버밍엄(Birmingham), 크로이던(Croydon), 더럼(Durham), 로치데일(Rochdale), 노팅엄(Nottingham), 리즈(Leeds), 썬리(Surrey), 웨스트 서섹스(West Sussex) 등

- 범죄경력이 있는 16-18세 청소년·청년 252명 대상 ① 유급 교육 프로그램 운영, ② 수자원 및 토지관리 등 관련 자격 보유 지원, ③ 개별 멘토링 등을 통해 재범률 감소와 함께 고용 기회 제공
- 중앙의 The Department for Digital, Culture, Media and Sport의 Life Chances Funding으로부터 성과 보상, Social Finance 지원으로 총 4곳의 사회적 투자자로부터 투자 유치
- 사회적기업 Skill Mill은 본연의 미션달성 및 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해 지방정부, 환경청뿐만 아니라 다양한 민간기업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SIB 수행 및 사업영역 확장*, 필요자원 연계**

** Skill Mill은 SIB 기간 동안 SIB사업비(2/3)와 함께 공공-민간으로부터 수자원 환경유지관리 작업 원료에 대한 수입(1/3)을 창출

** 관련 장비 및 IT기술을 보유한 업체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개인 보호 장비 및 안전 도구 공급, 차량 대여, IT관련 기술적 서포트 등 연계

사회적기업 주도의 SIB사업



☑ (사회적기업 & SIB) The Skill Mill 사례를 통해 SIB는 사회적기업의 성장·확장에 필요한 자본과 역량을 구축하는 데 유용

- ① 사업 규모화 및 추가적인 수익창출
- ② 경제적 성과와 함께 사회적 성과 창출
- ③ 창출된 사회적 가치를 현금화함으로써 대국민 체감도 제고
- ④ 이로 인하여 새로운 지역으로 사업 확장 등

사회적기업 성장·확장 전략 SIB



4) <https://www.theskillmill.org>

2. SIB 대상 사회적경제 적용 의미

사회적경제는 ① 지역중심적이고 수요자 대상 맞춤형 서비스 공급,
 ②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형태로 운영됨에 따라 SIB 성공률 제고

① 사회적경제기업은 지역중심적,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공급 가능

☑ (지역특성 고려) 사회문제는 사회·경제적 구조와 맥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환경 변화에 따라 개입 전략 또한 변화 필요 → 이에 가장 효과적인 대응은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문제해결* **

* 예를 들면, 전국적으로 획일화된 청년 실업정책이 아닌 대도시인지, 지방중소도시인지, 이전 산업도시인지, 농촌지역인지 등 지역특성에 기반한 청년 실업정책을 시행할 필요

** (영국의 1호 SIB) 영국의 사법부는 피터버러시 교도소 수감자의 재범률 감소를 위해 지역기반 사회적기업들이 출소한 수감자들의 원활한 지역사회 적응을 도울 수 있도록 지원

☑ (사회적경제기업) 수요자의 복합적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 단위 서비스를 공급하는 SIB는 지역중심적,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공급이 가능한 사회적경제기업을 활용하여 성과 창출

②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함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적 방안 등을 모색하는 사회적경제 운영형태는 SIB에 적합

☑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등) SIB가 주목받는 다양한 이유 중 하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협력적 메커니즘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작동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점

☑ (사회적경제 운영형태) 재무적 수익,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기부가 아닌 투자자 모집, 수행기관으로 하여금 목표 달성을 위한 혁신 방안 요구 등 SIB 체계는 사회적경제 운영형태와 부합

SIB는 ① 사회적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도구이자 ② 사회적경제를 활용해야 하는 정책이며,
 ③ 사회적경제의 새로운 성장모델

참고문헌

- 경기복지재단. 2016. 경기도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진단.
- 경남연구원. 2020. 경상남도 사회성과보상사업 도입을 위한 기초 연구.
-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2020. 서울시 사회적경제 시민체감도 측정 연구.
- 한국법제연구원. 2020. 사회적 가치 제도화 방안 연구(Ⅲ): 공공사회성과보상사업 추진 및 활성화를 중심으로.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7. 사회성과연계채권 도입방안.
- 행정안전부. 2017. 사회성과보상사업 추진 안내서.
- 황정윤·장용석. 2017. 사회적기업 지원의 딜레마: 정부보조금, 약인가 득인가. 한국정책학회보 제26권 제2호: 225-258.
<https://sibdatabase.socialfinance.org.uk/> (2022년 4월 1일 검색)

• **정은정**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정책연구본부 정책지원팀 과장
eunjung@ikosea.or.kr 031-697-7781

